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22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서류의 명칭	처분사유	
1	김○준	1977.5.7.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63번길 15(이하생략)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피보험 단위기간 미충족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폐문 부재로 등기 3회 반송
2	배○호	1978.10.26.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이하생략)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 2회 반송

4. 공고기간: 2024. 1. 30. ~ 2024. 2. 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김주민(Tel. 031-231-48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